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배점 관련 검토의견

□ 검토 필요성

- 국토부에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실시(22.12.26.)
 - * 산업안전지도사 등 8개 자격을 건설관련 자격 종목으로 추가 및 인정범위 확대 등
- 동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별표 3]“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에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지수 배점을 기사, 기능장과 같은 수준으로 부여
 - * 자격지수 배점: 기술사/건축사 40점, 기사/기능장/산업안전지도사 30점, 산업기사 20점
- 산업안전지도사의 법적 근거 및 역할 등을 살펴보고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지수 배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산업안전지도사의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9장“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에 총 13개조에 걸쳐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제142조),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제143조), 지도사의 등록(제145조) 등에 대해 명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2.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 ① 법 제1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1]“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에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에 대해 명시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

2.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건축·토목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 나. 가설구조물, 시공 중인 구축물, 해체공사, 건설공사 현장의 붕괴우려 장소 등의 안전성 평가
 - 다. 가설시설, 가설도로 등의 안전성 평가
 - 라. 굴착공사의 안전시설, 지반붕괴, 매설물 파손 예방의 기술 지도
 - 마. 그 밖에 토목, 건축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지도사의 위상

-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시행규칙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에서 산업안전지도사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대비 동급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고,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는 취득 후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져야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호 또는 제4호 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야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2.~4. (생략)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법 제42조제2항에서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 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에서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건설안전기술사, 건설 직무분야 기술사 등 기술사, 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두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전자 직무분야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4. 공학(건설안전·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에서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시행령 [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에서 산업안전지도사를 건설안전기술사 대비 동급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지도인력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

-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상 산업안전지도사의 위상

-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한 “제25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2-02호)에 따르면, 산업안전지도사는 건설안전기술사와 동일하게 45학점을 인정받게 되어 있으며, 건설안전기사는 20학점을 인정받고 있음

□ 검토 결과

-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 직무를 담당하는 최고의 자격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안전기술사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 법적인 형평성 측면에서 국토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안 [별표 3]의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지수 배점을 기사, 기능장과 같은 수준이 아닌 건설안전기술사 수준 이상으로 부여함이 타당함